



## GST/HST 간편기장... 일석이조

### 사례

Q씨는 몬트리올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2015년 초에 다른 건축 회사의 제안을 받고 토론토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전과 달리 고용형태(Employment)가 아닌 계약형태(Self-employment)로 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회사는 Q씨에게 급여 대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Q씨는 이러한 계약에 만족해했는데 이는 수수료 형태로 받음으로써 급여로 받을 때에 비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수수료에 GST/HST까지 포함하여 받아서 실수령 금액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가 됨으로써 국세청에 GST/HST를 등록하고, GST/HST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 장부정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GST/HST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어렵지 않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GST/HST 사업자로 등록할 때 GST/HST 신고 기간을 정해야 했는데 장부정리에 자신이 없었던 Q씨는 가장 간편한 방법인 1년마다 신고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예전보다 자금흐름이 훨씬 여유로웠던 Q씨는 매월 건축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여유롭게 소비할 때는 좋았는데 연도가 바뀌어 GST/HST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Q씨는 그동안 GST/HST 금액을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수입 일부로 생각해서 써버린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Q씨는 토론토에 온 이후에 회계사와 상담한 적이 없었으나 GST/HST 신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GST/HST 납부금액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회계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GST/H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판매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의료, 교육, 금융기관 등의 면세 품목을 제외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GST/HST를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GST/HST 납부액은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collected)에서 사업경비에 대한 매입세액(Input tax credits)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캐나다의 각 주는 GST 또는 HST를 부과하는 데 Ontario주는 HS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Ontario주의 HST 세율은 13%로 이러한 판매세를 걷어서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할 때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연간 GST/HST 납부금액이 \$3,000 이상 일 때에는 신고주기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Q씨는 처음으로 GST/HST 신고를 하는 경우여서 이러한 일시부담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GST/HST 신고시에는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장부정리 과정을 거쳐서 사업경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의 복잡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중소기업자에게 간편하게 GST/HST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GST/HST 간편기장 방법(Quick Method of Accounting for GST/HST)이라고 하며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GST/HST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매입세액이 적은 부동산 중개인, 임대업,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소득자 등에게 유리한데 사전에 일반 방법과 간편기장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씨의 경우를 살펴보니 1년간 총매출액이 \$180,000가량이고 매입세액이 적어서 일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HST가 \$23,000가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편, 간편기장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때에는 납부할 금액이 \$18,000가량으로 계산되어 간편기장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5,000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세금절감 효과 외에도 Q씨가 간편기장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HST 매입세액을 분류하여야 하는 장부정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부정리에 익숙

하지 않은 Q씨는 간편기장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세금절약과 업무량 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 해결책 및 결론

간편기장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Q씨에게 최선으로 보였지만 불행하게도 Q씨는 2015년 GST/HST 신고시 간편기장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법에서는 간편기장 방법을 선택할 경우 일정한 신청 기간을 두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신고시에는 간편기장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방법을 사용하여 GST/HST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Q씨는 이러한 설명을 회계사에게서 듣고 일반 방법에 따라 계산된 \$23,000가량의 GST/HST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Q씨가 실망하지 않았던 건 생각하지 못했던 GST/HST 간편기장 방법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세금절약과 장부정리의 복잡함을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